

프리랜서 노동자 관련 2023년 개정 세법 요약

(‘22.12.23 (금), 국회 본회의 통과)

국세기본법

-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
 - (내 용) 경매·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중 주택임차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배분 순위가 낮은 세금은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
 - (시행시기) `23.4.1. 이후 매각결정(공매) 또는 매각허가 결정(경매)분부터 적용

-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거부·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
 - (내 용) (종전) 2천만원 → (개정) 5천만원
 - (시행시기) `23.1.1.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

국세징수법

-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
 - (내 용)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임차개시일 이전까지 임차물건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 가능. 소액보증금은 제외*
 - *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
 - (통지의무)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
 - (시행시기) `23.4.1.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

-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
 - (내 용) 소득 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

-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: 반기별 → 월별 제출
-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: 연 1회 → 월별 제출
- (적용대상)
 - `24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
- (내 용) 가산세 부담 완화
 -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율 (1%)보다 낮은 0.25% 적용
 -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면제
 - (적용대상)
 - `24.1.1. ~ `24.12.31.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(소규모사업자는 `24.1.1. ~ `25.12.31.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)
 - `24.1.1. ~ `24.12.31.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

종합부동산세법

□ 다주택자 증과세율 조정

- (내 용)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증과세율 폐지 및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증과세율 조정

과 세 표 준	2주택 이하*	3주택 이상
3억원 이하	0.5%	
3억원 초과 6억원 이하	0.7%	
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	1.0%	
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	1.3%	2.0%
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.5%	3.0%
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	2.0%	4.0%
94억원 초과	2.7%	5.0%
법 인	2.7%	5.0%

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

조세특례제한법

□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

- (내 용) 19% 단일세율* 적용
 - 비과세·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
 - * 종합소득세율(6~45%) 선택 가능
- (적용기간) (종전)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 → (개정) 20년
- (적용기한) `23.12.31.

□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

- (대상) 청년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
- (감면율) 70%(청년은 90%)
- (감면기간) 3년(청년은 5년)
-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음식점업 등
- (감면한도) (종전) 150만원 → (개정) 연간 200만원
- (적용시기) `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- (적용기한) `23.12.31

□ 청년도약계좌* 과세특례 신설

- *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
- (가입요건) ①만 19~34세 ②총급여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 (직전 3개 연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)
- (세제지원)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
- (운용재산) 예·적금, 펀드, 국내상장주식 등
- (납입한도) 연 840만원
- (의무가입기간) 5년
 - *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·해지시 감면세액 추징
- (적용기한) `25.12.31.까지 가입분

□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

-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
- (공제율) (종전) 월세액의 10%·12%* → (개정) 15%·17%*
 - 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
- (공제한도) 750만원
- (적용시기) `23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□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

-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* 신설
 - *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□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- (적용대상)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
- (공제금액)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-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(세무회계법인 600만원), 최소공제액 1만원
- (적용기간) `24.1.1. ~ `25.12.31.

□ 신용카드등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

- `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%에서 80%로 두 배 상향 조정

□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

- (공제대상)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`21년 대비 5% 초과분
- (공제율) 20%
- (공제한도) 100만원
- (적용기간) `22.1.1. ~ `22.12.31.까지 사용금액